

I . 결산검사의견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검사기간 : 2007. 6. 1 ~ 6. 20 (20일간)

2. 감사위원 : 5명

- 대표위원 : 김승동(부천시의회 의원)
- 위 원 : 성광식(전 부천시 회계과장)
- 위 원 : 안길준(회계사)
- 위 원 : 지군섭(세무사)
- 위 원 : 지선봉(세무사)

3. 감사항목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이월사업비(명시, 사고, 계속비)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 기타

4. 감사장소 : 시청 및 구청 결산감사장

붙 임 : 결산검사 의견서 1부.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부천시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 일동은 지방자치법 제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의회로부터 2006회계연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 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채권, 채무, 물품 및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준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아울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사항도 검사활동에 포함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부천시의 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일부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개선권고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다음연도의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 전원은 금번 결산검사시에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엄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의 2006회계연도 결산이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2007년 6월 20일

2006회계연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김 승 동



위원 성 광 식



위원 안 길 준



위원 지 균 섭



위원 지 선 봉



Ⅱ. 결산검사경과

1. 검사기간 : 2007. 6. 1 ~ 6. 20 (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김 승 동	결산검사 총괄	부천시의회 의원
위 원	성 광 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검사	전직공무원
위 원	안 길 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검사	회계사
위 원	지 군 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사	세무사
위 원	지 선 봉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사	세무사

3. 결산검사 세부 일정

구 분	일 정 별	결산검사 내용	비 고
부천시의회	6. 1(금)	결산검사일정 협의 및 현황과약	1일차
시분청 및 사업소	6. 4(월)	원미, 소사, 오정구보건소,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세정과(세입)	4일차
	6. 5(화)	충무, 자치행정, 정보통신, 시민봉사, 정책기획, 예산법무, 세정과(세입)	5일차
"	6. 7(목)	회계과, 지역경제, 기업지원, 문화산업, 문화예술, 농산지원, 세정과(세입)	7일차
"	6. 8(금)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가정복지, 체육청소년, 위생과, 세정과(세입)	8일차
"	6. 11(월)	환경보전, 청소, 도시계획, 도시개발, 공기업, 세정과(세입)	11일차
"	6. 12(화)	녹지공원, 건축, 시설공사, 교통행정, 교통시설, 도로과, 세정과(세입)	12일차
"	6. 13(수)	도시철도, 차량관리, 재난안전관리, 감사, 공보, 움브즈만, 세정과(세입)	13일차
각 구청	6. 14(목)- 6. 18(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14일- 18일차
결산검사장	6. 19(화) - 6.20(수)	위원별 지적사항 종합토론 및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내용 검토	19-20 일차

4. 결산검사진행

- 대표위원 책임 하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2개조로 분류 검사 실시
- 결산검사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에 현지확인 검사를 병행 실시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의 협의를 거쳐 의견 조정
- 의문이 있거나 위법성 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Ⅲ. 총 평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그 합목적성, 효율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당초 편성예산과의 괴리 정도나 재정운영 성과 등을 파악한 다음,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예산의 환류기능을 다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들은 그 경중을 불구하고 반드시 차기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잘못된 점은 집행과정에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중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2006년도 부천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세입 세출의 전 과정에서 업무의 전산화나 시스템화가 강화되면서 보다 투명성이 확보되고 불필요한 낭비요인이나 오류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민간위탁금 중 퇴직적립금 관리문제 등 일부에서는 지난 해 결산검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바 특별한 인식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 재정의 경우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입의 증가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체납세 징수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앞으로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체납액 일소 등 안정적인 세입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중과세 대상의 누수없는 파악 및 지방세 감면대상, 결손처분과 시효완성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역시 세입의 안정화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필요이상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고액의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율이자 조기상환, 신규 토지수요의 조기 확보 등 향후에 나타날 세출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구나 부천시에는 지하철 건설, 추모공원 조성, 문예회관 건립 등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대형사업과 각종 복지회관, 도서관, 산하 재단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 증대 그리고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의 증가 등 지속적이고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예산수요는 장래 시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는 본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편성단계에서부터 경상적 경비의 절감,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하여 「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꾀함으로써 예산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지리적 입지의 우수성을 최대한 활용한 명품 주거단지의 개발 등 생산성 높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우량세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한 특별한 노력과 창의적 발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운영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IV.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석

I. 총괄결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결산을 검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06년	1,168,748	1,205,986	864,928	341,058
2005년	1,199,636	1,194,812	808,696	386,116
2004년	1,198,698	1,243,886	762,706	481,180

(단위:백만원)

세계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				불용액		초과세수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 비 사용잔액		
175,134	11,857	11,266	152,011	3,505	125,181	37,238	185,519
223,237	33,645	12,817	176,775	2,840	164,863	-4,824	160,039
231,872	44,875	10,256	176,741	1,465	202,656	45,188	247,844

※ 순세계잉여금 = 초과세수 + 시비집행잔액

1. 총괄 결산 분석

- 가. 재정규모 감소 : 전년(2005년)대비 예산현액이 30,888백만원이 줄어 2005년보다 2.57% 정도의 재정규모가 감소 되었습니다.
- 나. 세입수납액 증가 : 전년(2005년)대비 세입결산액이 11,174백만원 늘어 2005년보다 0.9%의 세입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 세출결산액 증가 : 전년(2005년)대비 세출결산액이 56,232백만원 늘어 2005년보다 6.95% 정도 세출결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라. 세계잉여금 감소 : 전년(2005년)대비 세계잉여금이 45,05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마. 체납액 증가 : 전년(2005년)대비 체납액이 1,84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세입결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을 검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세수
2006년	1,168,748	1,342,515	1,205,986	17,458	119,071	37,238
2005년	1,199,636	1,321,673	1,194,812	9,639	117,222	-4,824
2004년	1,198,698	1,348,663	1,243,886	5,831	98,946	45,188

○ 검사분석

-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1,174백만원이 증가한1,205,986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초과수납은 예산현액의 3.19%인 37,23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22,115백만원, 세외수입 Δ 1,126백만원, 특별회계 30,695백만원의 증가와 기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서 Δ 14,446백만원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미수납액 119,071백만원은 전년도 117,222백만원보다 1,84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주민세, 재산세와 특히 아직도 지난년도 수입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입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일반회계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체납관리와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관리가 중요하다 하겠으나 일부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관심결여 및 업무미숙 등이 아직도 눈에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고사항

- 날로 증대되는 세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세수추계자료의 정확한 분석으로 세입예측과 세입금 관리에 보다 과학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특히 체납액 중 2006년도 총 결손처분액인 17,458백만원에 대한 사유별 분석을 살펴보면 무재산 14,002백만원, 행방불명 14, 시효완성 3,273백만원, 공매시배당무가 114백만원 기타 5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체납액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일실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구나 1천억원을 상회하는 미수납액의 징수는 신규 세원의 발굴에 버금가는 세입자료인 만큼 통상적인 징수 방법에 머물지 말고 과학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3. 세출 결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출결산을 검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06년	1,168,748	864,928 (74%)	175,134 (15%)	11,857	11,266	152,011 (23,100)	128,686 (11.0%)
2005년	1,199,636	808,696 (67.4%)	223,237 (18.6%)	33,645	12,817	176,775	167,703 (14.0%)
2004년	1,198,698	762,706 (63.6%)	231,872 (19.3%)	44,875	10,256	176,741	204,121 (17.0%)

○ 검사분석

- 예산액은 945,511백만원이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된 223,23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68,74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571백만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의 자치단체 인사행정 프로그램 도입 외 4건입니다.
- 예비비 지출결정은 총 8건 701백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 36백만원 외 5건입니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0%에 해당하는 128,686백만원으로 전년(14.0%)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고액 불용액은 특별회계의 도시철도사업 불용액 66,417백만원이 있습니다.
-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의 29.2%인 341,058백만원으로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5,51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60,039백만원보다는 25,48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0%에 해당하는 864,928백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0%에 해당하는 175,13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1,857백만원, 사고이월 11,266백만원, 계속비이월 152,011백만원이며 그 주요사업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공사, 동남우회도로개설공사,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등 장기 계속공사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며, 일부 이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분석미흡과 업무 추진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욱 정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V.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1) 세입결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합계	773,915	883,515	780,457	15,362	87,696	6,542	
지방세	218,109	304,833	240,223	14,825	49,784	22,114	
세외수입	소계	278,543	315,864	277,416	537	37,912	-1,127
	경상적수입	41,048	41,349	40,246	0	1,104	-802
	임시적수입	237,495	274,515	237,170	537	36,808	-325
지방교부세	6,233	6,612	6,612	0	0	379	
조정교부금등	100,229	109,251	109,251	0	0	9,022	
보조금	124,701	123,955	123,955	0	0	-746	
지방채	46,100	23,000	23,000	0	0	-23,100	

(1) 총괄 검사 분석

- 2006년도 일반회계 수납액 780,457백만원은 세입예산현액773,915백만원보다 0.8% 증가된 6,542백만원의 초과세입이 수납되었습니다.
-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8.3%로서 전년도 88.6%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인 87,696백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2006년	773,915	883,515	780,457	15,362	87,696	6,542
2005년	757,166	815,807	722,428	9,356	84,022	-34,738
2004년	796,639	874,635	801,515	5,771	67,349	4,876

○ 검사분석

- 2005년도 수납액은 722,428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수납액이 780,457백만원으로 58,02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 차이는 지방세에서 31,548백만원 증가, 보조금에서 23,463백만원 증가와 임시적세의수입에서 33,784백만원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납니다.
- 2005년도 미수납액은 84,022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미수납액은 87,696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4.4%가 증가되었습니다.
- 그간 좁혀지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금년들어 대폭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징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3) 연도별 지방세 초과세입 현황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기타
2006년	22,114	6,767	1,613	5,576	-124	2,060	6,222
2005년	-11,046	1,627	-6,908	-1,969	-25	2,386	-6,157
2004년	12,527	2,445	-884	6,161	1,805	1,379	1,621

○ 검사분석

- 지방세의 초과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 금액입니다. 2005년도는 초과세입이 -11,046백만원 이었으나 2006년도 22,114백만원으로 지방세 예산현액 218,109백만원 대비 약 10.1%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괴리가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세입예측에 의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 연도별 세외수입중 초과수납 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006년	-1,126	-802	-324
2005년	-15,655	-1,703	-13,952
2004년	2,202	-449	2,651

○ 검사분석

- 2006년도 세외수입 부족금액은 2005년에 비하여 대폭(14,529백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부과, 수납체계에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지방세별 미수납액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난연도수입
2006년	8,106	3,032	4,728	1	1,218	42	32,657
2005년	10,137	3,031	4,931	6	1,441	16	33,851
2004년	11,358	1,787	5,313	1,756	1,369	55	26,982

○ 검사분석

- 2006년 지방세 체납액은 49,784백만원으로 2005년 53,413백만원에 비하여 6.8%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세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6) 세외수입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잡수입및이자	지난연도
2006년	37,912	959	139	2	0	9,312	27,500
2005년	30,610	1,198	295	17	0	12,515	16,584
2004년	18,730	976	169	23	0	5,151	12,411

○ 검사분석

- 전년대비 미수납액 증가율은 26.6%로 증가금액은 7,302백만원입니다. 특히 지난연도수입 10,91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및 재산압류	기타
2006년	87,696	0	3,410	12,919	17,976	53,391	0
2005년	84,022	0	5,238	19,106	8,696	50,982	0
2004년	67,348	0	4,001	14,535	20,250	28,562	0

○ 검사분석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나타나고 특히 고질적 체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 순수세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수입 (①+②)-(③+④)
2006년	240,223	277,416	144,414	49,100	324,125
2005년	208,676	308,905	183,208	35,229	299,144
2004년	210,597	392,795	187,672	0	415,720

○ 검사분석

- 순수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자립도의 규모를 산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입으로 2006년도 순수세입은 324,125백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4,98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순수세입의 증가는 2006년에 지방세 31,547백만원, 재산 매각수입 2,237백만원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9) 연도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2006년			2005년			차액 (06-05)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합계	496,651	517,639	104.2	544,282	517,581	95.10	58	
지방세	주민세	48,173	54,940	114.0	44,865	46,493	103.62	8,447
	재산세	36,394	38,608	106.1	39,980	33,033	82.62	5,575
	자동차세	30,715	32,328	105.3	35,621	28,713	80.60	3,615
	도축세	1,946	1,737	89.3	1,890	1,566	82.85	171
	담배소비세	38,279	43,855	114.6	40,750	38,781	95.16	5,074
	종합토지세	0	-124	-	57	32	56.14	-156
	주행세	23,874	26,008	109.0	22,555	23,905	105.98	2,103
	도시계획세	26,286	28,346	107.8	22,215	24,601	110.74	3,745
	사업소세	4,515	4,747	105.1	4,300	4,468	103.90	279
	지난연도수입	7,927	9,779	123.4	7,488	7,084	94.60	2,695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3,290	2,630	80.0	2,678	1,724	64.37	906
	사용료수입	7,281	8,472	116.4	6,523	7,261	111.31	1,211
	수수료수입	14,274	14,418	101.0	14,395	13,366	92.85	1,052
	사업수입	2,275	2,577	113.3	2,112	2,166	102.46	411
	징수교부금	7,142	7,949	111.3	7,183	7,005	97.52	944
	이자수입	6,785	4,199	61.9	6,762	6,430	95.09	-2,231
	재산매각수입	4,000	3,254	81.4	12,000	1,017	8.47	2,237
	순세계잉여금	809	809	100	39,878	39,878	100	-39,069
	이월금	147,009	147,173	100.1	184,697	184,639	-	-37,466
	전입금	55,324	49,100	88.7	35,232	35,229	100	13,871
	융자금	28	10	35.7	0	21	0	-11
	부담금수입	21,999	24,590	111.8	4,450	480	10.78	24,110
	잡수입	6,917	10,123	146.3	7,160	8,430	117.75	1,693
	지난연도수입	1,409	2,111	149.8	1,491	1,259	85.78	852

○ 검사분석

- 자주재원의 근간인 순수세입의 과목별 예산액과 수납액을 비교하면 큰 편차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세출에 세입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5년			비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합계	620,697	517,639	83.4	610,960	517,581	84.7		
지방세소계	304,833	240,224	78.8	271,125	208,676	77.0		
지방세	주민세	65,399	54,940	84.0	57,204	46,493	81.2	
	재산세	41,649	38,608	92.7	36,112	33,033	91.4	
	자동차세	37,137	32,328	87.0	33,649	28,713	85.3	
	도축세	1,737	1,737	100	1,566	1,566	100	
	담배소비세	43,855	43,855	100	38,781	38,781	100	
	종합토지세	-123	-124	100.8	37	32	86.4	
	주행세	26,008	26,008	100	23,905	23,905	100	
	도시계획세	29,570	28,346	95.8	26,051	24,601	94.4	
	사업소세	4,789	4,747	99.1	4,483	4,468	99.6	
	지난년도수입	54,812	9,779	17.8	49,337	7,084	14.4	
세외수입소계	315,864	277,415	87.8	339,835	308,905	90.9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3,589	2,630	73.2	2,923	1,724	58.9	
	사용료수입	8,610	8,472	98.4	7,556	7,261	96.1	
	수수료수입	14,420	14,418	99.9	13,383	13,366	99.8	
	사업수입	2,577	2,577	100	2,166	2,166	100	
	징수교부금	7,949	7,949	100	7,005	7,005	100	
	이자수입	4,203	4,199	99.9	6,435	6,430	99.9	
	재산매각수입	3,254	3,254	100	1,017	1,017	100	
	순세계잉여금	809	809	100	39,878	39,878	100	
	이월금	147,173	147,173	100	184,639	184,639	100	
	전입금	49,100	49,100	100	35,229	35,229	100	
	융자금	10	10	100	30	21	70	
	부담금수입	24,590	24,590	100	1,939	480	24.7	
	잡수입	19,432	10,123	52.0	19,472	8,430	43.2	
	지난년도수입	30,148	2,111	7.0	18,163	1,259	6.9	

-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가장 큰 부분인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2005년 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한 수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세출결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검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도별 세출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잔액	시비 잔액	
2006년	773,915	605,687	104,681	6,530	5,222	92,929 (23,100)	3,429	60,118	8.2
2005년	757,166	574,446	144,414	21,898	8,021	114,495	2,759	35,547	5.0
2004년	796,639	576,999	183,208	31,673	3,266	148,269	1,431	35,001	4.8

○ 검사분석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3%에 해당하는 605,68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04,681백만원(예산현액대비 13.5%)의 이월액과 63,54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불용액은 2005년 예산현액의 5%에서 2006년도에는 8.2%로 증가하여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월액 내역을 사업건수별로 확인한 결과 명시이월은 36건, 사고이월 17건, 계속비 이월 31건으로 많은 사업이 연도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기능별 세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금				불용액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773,915	605,687	127,781	6,530	5,222	116,029 (23,100)	40,447
일반행정비	154,869	146,260	1,852	643	1,209	0	6,757
사회개발비	380,175	303,056	60,389	4,057	2,304	54,028	16,730
경제개발비	214,438	143,521	65,540	1,830	1,709	62,001	5,377
민방위비	2,678	2,303	0	0	0	0	375
지원및기타경비	21,755	10,547	0	0	0	0	11,208

2.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1) 세입총괄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94,833백만원이며, 수납총액은 425,529백만원으로 회계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94,833	458,999	425,529	2,096	31,374
공기업특별회계	148,320	187,898	183,702	0	4,196
상수도	44,873	79,643	77,679		1,964
하수도	103,447	108,255	106,023		2,232
기타특별회계	246,513	271,101	241,827	2,096	27,178
주택사업	46	44	44	0	0
의료보호	2,772	2,904	2,823	0	80
영세민	1,268	1,606	1,221	0	385
도시개발	43,156	35,246	35,245	0	1
교통사업	60,568	90,800	61,993	2,096	26,712
도시철도	137,703	139,456	139,456	0	0
장기미집행	1,000	1,045	1,045	0	0

2) 연도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공기업제외)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 재산압류중	기타
2006년	27,178	0	2,036	3,156	12,798	9,030	158
2005년	27,735	0	1,491	13	6,879	19,266	86
2004년	26,828	0	2,823	53	13,359	10,500	93

3) 세출총괄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259,241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394,833백만원의 65.66%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394,833	259,241	5,328	6,044	35,982	88,238
공기업특별회계	148,320	121,528	303	2,016	14,980	9,493
상수도	44,873	41,953	55	0	0	2,865
하수도	103,447	79,575	248	2,016	14,980	6,628
기타특별회계	246,513	137,713	5,025	4,028	21,002	78,745
주택사업	46	9	0	0	0	37
의료보호	2,772	2,726	0	0	0	46
영세민	1,268	424	0	0	0	844
도시개발	43,156	29,630	0	3,991	0	9,535
교통사업	60,568	33,450	4,625	37	21,002	1,454
도시철도	137,703	70,886	400	0	0	66,417
장기미집행	1,000	588	0	0	0	412

VI. 예비비 결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01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99백만원이고 불용액은 2백만원 입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비 고
2006년	701	699	2	
2005년	974	964	10	
2004년	1,976	1,762	214	

○ 검사분석

- 2005년에는 호우피해주택 복구지원,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선거경비 및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등으로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에는 집중 호우피해 관련 36백만원, 아동보육 관련 사업에 663백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VII. 기금결산

2006년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지방자치단 체출연금	국비보조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전년도 이월금	당해년도 사용액	
부천시 장학기금	3,945	100	0	139		3,706	126	3,819
부천시체육진흥기금	4,187	100	0	147		3,940	70	4,117
부천시중소육성기금	16,900	200	0	634		16,066	644	16,256
부천시 소규모유통 육성기금	1,045	100	0	36		909	24	1,021
부천시 보훈기금	909	100	0	59		750		909
부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1,976	100	0	77	28	1,771		1,976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1,657	100	0	58		1,499	44	1,613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5,320	0	0	187		5,133	193	5,127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1,134	40	0	43	91	960	101	1,033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4,452	100	0	148		4,204	134	4,318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634	100	0	26		508	10	624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1,038	0	71	39	104	824	71	967
부천시재난관리기금	11,434	100	0	856		10,478		11,434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146	584	0	100		2,462	194	2,952
합계	57,777	1,724	71	2,549	223	53,210	1,611	56,166

통합관리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예수금	이자수입	전년도이월금	당해년도 사용액	
통합관리기금	57,482	56,166	1,316		10,546	46,936

○ 분석

- 현재 설치되어있는 15개 기금의 200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6,166백만원으로 2005년도말 기금조성액 53,210백만원 대비 5.6%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출연금 1,724백만원과 이자수입 2,549백만원 등을 포함 총 4,56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611백만원이었습니다.
- 기금관련 주요수입지출액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기금관련 주요 수입지출액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지출액
2006년	1,724	2,549	223	1,611
2005년	4,380	1,871	316	2,042
증감액	-2,656	678	-93	-431
증감율	-61%	36%	-29%	-21%

- 신규 출연금은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2005년도 보다 61%가 감소한 1,724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운영 및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549백만원이나,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기타잡수입은 22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 감소하였습니다.
- 지출액은 2005년 대비 21% 감소한 1,611백만원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금 지원 실적이 이자부담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금이 3개 기금이었으나 2개 기금(보훈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어 결산검사 현재일까지 위원회가 미 설치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이는 협의체에서 운영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6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여유자금 발생시 전략적 통합 예치로 금융기관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아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SOC시설 및 주민복지증진 투자 등 생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90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자금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VIII. 채권 결산

1. 채권 총괄 현황

2006년도의 채권 증감에 의한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계	10,071	2,310	964	11,417	
일반회계	8,280	1,685	499	9,466	
특별회계	소계	1,651	625	465	1,811
	주택사업	9	0	9	0
	의료보호기금	80	10	10	80
	영세민생활안정	1,562	615	446	1,731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140	0	0	140	

2. 연도별 채권 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2006년	10,071	2,310	964	11,417
2005년	5,667	5,705	1,301	10,071
2004년	12,331	3,865	10,529	5,667

○ 분석

- 2006년말 현재 채권종류별로 보증금채권 10,139백만원, 융자금채권 1,211백만원, 기타채권 67백만원입니다.

IX. 채무 결산

1. 채무 총괄 결산

2006년 채무총괄 현황은 전년도보다 14,726백만원이 증가한 86,19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71,469	23,000	8,274	0	86,195
일반회계	53,140	23,000	5,565	0	70,575
특별회계	18,329	0	2,709	0	15,620
공기업	18,320	0	2,700	0	15,620
기타	9	0	9	0	0

2.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전년도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6년	71,469	23,000	8,274	0	86,195
2005년	76,530	4,000	9,061	0	71,469
2004년	113,644	6,420	43,228	-306	76,530

- 2006년도 발생된 주요 채무 내용은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사업 170억원, 역곡우회로 개설공사 60억원이 되었습니다.

X.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006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20,787백만원이 증가한 2,588,86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	감		
합계	2,468,077	124,606	3,819	2,588,864	
행정자산	계	1,955,453	124,606	1,242	2,078,817
	공공용재산	1,721,624	65,481	0	1,787,106
	공용재산	74,129	58,054	0	132,183
	기업용재산	159,700	1,071	1,242	159,528
보존재산	0	0	0	0	
잡종재산	512,624	0	2,577	510,047	

XI. 물품증감 및 현재액

2006년말 물품은 전년도보다 4,348백만원이 증가한 6,57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구분	수량	232	503	24	711
	금액	2,226	4,524	176	6,574

- 2006년도 물품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정수물품 품목이 일부 변경되면서 비정수물품이 정수물품으로 변경되어 당해연도 취득금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XII.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분야

1) 지방자주재원의 확보 방안 강구

□ 현 황

- 재정측면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주재원이 선결 과제라 하겠음. 부천시의 경우 전체 예산현액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장기적으로 세원확충이 없는 경우,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임.

세 입 총 괄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순수납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순수납액
합 계	757,166	815,807	722,428	773,914	883,515	780,456
지 방 세	219,721	271,125	208,676	218,109	304,833	240,223
세외수입	324,561	339,835	308,905	278,542	315,864	277,415
의존재원	212,884	204,847	204,847	277,263	262,818	262,818

□ 문제점

- 2006년 순수납 총액중 지방세 30%, 세외수입 35.5%, 의존재원 33.6%로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나타내는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취약함.

□ 개선 권고사항

- 재정책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세수를 향상 시키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부천시 특성에 맞게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 음성, 탈루 및 은닉세원들을 발굴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2)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현 황

- 세수추계는 지방재정규모를 산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므로 정확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함. 매년 동일 유형의 세수추계 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예상변동분과 특수요인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재산세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순수납액	미수납액
2006년	36,394	41,648	38,607	3,040
2005년	39,980	36,111	33,033	3,078
2004년	17,200	18,854	17,067	1,787

□ 문제점

-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고 균등할의 경우 회비적 성격으로 주민세대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이어서 세수추계의 안정성과 정확을 기할 수 있는 반면, 소득할의 경우 국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추계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짐.
- 재산세의 경우 세수추계가 전년도 부과, 징수를 기초로 이루어져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는 예상변동분과 특수요인을 반영함에 있어 현실에 근접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짐.

□ 개선 권고사항

- 재산세에 대한 세수추계는 과세대장상의 주택유형별, 지목별로 상이한 과표 증감율을 적용하여 토지분은 관내 합산하고, 주택분은 물건별로 산출된 과표에 세율 적용한 후 전년대비 세액상한 한도를 적용하여 산출, 집계하는 추계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과표 증감율은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상의 가격변동을 또는 현지확인 된 매매사례 가격에 예상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주택 가격 공시를 예측할 수 있으며,
-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자료상의 시군 및 지목별 지가변동을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고,
- 특수요인은 관내 신·증축 및 멸실 등 변동분을 가감하는 등 합리성에 제고될 수 있는 추계모형에 의하여 세수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세수추계모형

구 분	산 출 모 델
주 택 분	(주택유형별 재산세 과세자료×과표증감률×주택재산세 세율)±특수요인
토 지 분	(지목별 재산세 과세자료×과표증감률×토지재산세 세율)±특수요인

3) 지방세 감면 대상 사후관리 철저

□ 현 황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보칙에서는 감면자료 제출과 감면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내용도 지방의회 및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선심성 행정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6년도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건)

계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45,880	6,764	35,292	3,693	131	-

□ 문제점

- 감면에 대한 검사결과 재산세 주요감면대상은 건설·매입임대 사업자이며 자동차세 감면은 대부분 장애인 소유자동차임.
- 종합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후관리실태가 단순, 형식적인 면이 있고, 감면위배사항에 대한 세액추징도 미미함.

□ 개선 권고사항

-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면현황을 일괄적으로 분석, 검증 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 공평과세구현과 성실납세 제고 측면에서 감면요건을 위배 한 감면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

4) 재산세 중과세 대상 파악 철저

□ 현 황

재산세 중과세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사치성 재산			공장 신설, 증설	주거지내 공 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기타		
2006년	3,620,294	3,605,587	-	-	-	14,707
2005년	3,035,726	3,014,111	-	-	-	21,615

□ 문제점

- 공장 신설·증설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저조하고 대부분 영업 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과생된 자료에 의존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권고사항

- 중과세 제도는 정책적 목적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하여 일반세율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므로 세수입에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탐문조사와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에 중과세를 함으로써 세수향상에 기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관리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5) 결손처분과 시효완성 대상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철저

□ 현 황

2006년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결 손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등무배상	기타
계	2,447	2,445			2	
주 민 세	2,353	2,351			2	
재 산 세	8	8				
자동차세	80	80				
도시계획세	6	6				

□ 문제점

- 주민세에 대한 무재산 결손처분 비율(96.1%)이 상대적으로 높음.
- 수색조서 미첨부, 미통지로 소멸시효가 조기에 완성되어 조세채권 일실 우려 있음.
-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함.

□ 개선 권고사항

-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보되어 수사부와 단계까지 시간적 지연과 납부의무자의 납세 도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결손처분으로 이어지므로 담당공무원의 지속적, 반복적 납부독려로 세수일실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하였을 때에 시효가 중단되고 수색일 익일에 새로 진행하게 됨.
-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시 대부분 수색조서가 첨부되지 않아 소멸시효 기산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자는 수색조서 첨부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액의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을 관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결손처분액도 소멸시효 완성전에는 시 정부조세채권액이므로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철저

□ 현 황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진행재산 압류
계	26,712		2,027	3,155	12,580	8,950
일반부담금	252		83		169	
과태료 및 벌칙금	3,912		254	463	1,844	1,351
지난년도수입	22,548		1,690	2,692	10,567	7,599

□ 문제점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고질적 체납액이 12,580백만원으로 관리 부재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과의 불평등 초래

□ 개선 권고사항

- 당초 부과할 때에 신원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거소불명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무재산자의 이월액 중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결손처분 등에 의하여 이월액을 줄여서 관리비용 절감
-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실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인력 등을 감안하여 체납액 정리와 병행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바람.

2. 세출분야

1) 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억제

□ 현 황

- 예산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를 기초로 정교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아직도 사업계획의 부정확성, 부기 산출기초 작성의 정밀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006년도 1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부서별	발생건수	집행잔액	비고
계	46	231	42,471,348	
본청, 사업소	29	155	33,804,415	
원미구청	7	33	6,811,382	
소사구청	6	28	1,413,067	
오정구청	4	15	442,484	

□ 문제점

- 집행 잔액의 발생원인은 ①완벽한 사업계획 수립 전에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 ②정밀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않은 부기편성 ③잔여 예산의 주기적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른 실지 집행시기를 농침에 따라 2006년도 1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만도 424억원에 달하고 있음. 물론 이 중에는 각종 사업의 입찰 집행 잔액도 포함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 위의 지적 원인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임.
- 무엇보다도 집행 잔액 과다발생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시급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몇 백만원에서 몇 십억 원에 이르는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미루어지거나 사장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즉, 예산편성당시 조금만 더 정교하게 계상한다면 집행 잔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

□ 개선 권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예산 편성당시 부기 산출기초의 근거자료를 정확히 첨부토록 하여 과다계상을 억제하고 집행과정에서 주기적인 잔여예산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예산의 전용을 늘리는 사례 역시 방지하여야 할 것임.

2) 예산의 부기 목적 외 사용근절

□ 현 황

- 예산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이에 알맞은 예산의 편성 그리고 편성 부기의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 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도 부기 목적 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잔존하고 있음.

예산의 부기 목적 외 집행 사례

(단위 : 천원)

부서별	당초 예산부기		목적 외 집행내용		비고
	부기내용	금액	집행내용	금액	
정보통신과	· PC자산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207,680	· 노후행정전산장비구입 · 웹서버 및 솔루션구입	68,214 6,000	일부
회계과	· 공공요금 및 제세	695,907	· 건물시설유지비	47,339	일부
문화예술과	· 전국공예상품 공모전	50,000	· 제1회 한국 전통문양 공예대전	50,000	전액
체육청소년과	·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등 5건	550,000	· 춘덕산 체육시설 설치 등 3건	62,472	일부
청소과	·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1,296,000	· 폐프라스틱, 폐섬유처리비	25,402	일부

□ 문제점

- 예산은 편성된 각 항목 부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도 당초 목적을 벗어나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예산 편성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과의 전통문양공예대전의 경우처럼 아예 사업계획과 방식을 완전히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 사업예산 잔액을 성격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도 자주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필요사업의 예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그 잔액을 유사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당초 예산 편성시 혹 제기될 수 있는 견제를 미리 차단하는 편법이 성행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예산은 반드시 항목의 부기 내용대로 정확히 집행한다는 원칙을 뿌리내리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사안의 경우 반드시 추경이나 예산 전, 이용 등 절차를 득한 후에 시행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임.

3)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기능 취약

□ 현 황

- 지역 내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목적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어야 마땅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여 자칫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2006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단체명	보조금	단체명	보조금
총 42 단체 24,150,267 천원					
상공회의소	210,000	소명여고	112,200	장애인종합복지관	2,955,015
피사프	300,000	푸른부천21	270,062	한국시각장애인	205,178
예총	300,000	보훈회관	181,154	농아인협회	218,765
부천문화원	160,000	실로암노숙인쉼터	102,400	지체장애인협회	107,020
국제판타스틱영화 제조직위문화원	600,000	원미자활후견기관	891,862	신체장애인협회	56,400
부천시체육회	1,247,970	소사자활후견기관	584,225	여성인력개발센터	153,351
부천남초등학교	2,052,700	나눔자활후견기관	2,087,568	여성의쉼터	121,929
역곡중학교	300,000	헤림(요양)원	2,532,537	새소망벨라(모자원)	285,726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단체명	보조금	단체명	보조금
월미구노인복지회관	556,799	새소망의 집	801,361	심곡복지회관	256,929
소사구노인복지회관	541,536	건강지원센터	140,000	부천시자원봉사센터	243,079
오정구노인복지회관	431,982	원종종합사회복지관	505,251	삼정복지회관	529,066
부천시니어클럽	248,746	부천종합사회복지관	395,181	고강복지회관	436,828
성가요양원	932,686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81,90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80,899
삼광전문요양원	1,001,960	한리종합사회복지관	283,549	덕유종합사회복지관	246,452

□ 문제점

- 연간 1억원이상 보조금 지원 규모만도 42개 단체 약 24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1억 원 미만까지의 보조금 성격 총액은 약 900억원) 이들 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는 해당부서의 정산서 검토 선에 머물고 있을 뿐 집행과정의 합법성, 합리성 등의 회계질서를 확인할 장치가 없음.
- 이는 시의 직접감사나(시장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휘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하여) 본청 보조금 지원부서의 업무감사를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기는 하나, 현재 본청의 감사체계가 상급기관인 도감사의 경우에도 사업비 10억원 미만 또는 부천시 자체고유사무의 경우 감사를 받지 않도록 직협과 합의 되어 있듯이, 사실상 시 본청 과단위에 대한 자체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과 소관단체에 대한 정산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 실례로 모 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사무국장의 급여(활동비)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았고 00지회의 경우 00숯불갈비의 식대를 영수증 없이 개인명의로 무통장 입금했으며 00인쇄소의 인쇄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등의 징구를 하지 않는 등 무질서한 회계처리 사례가 잔존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본청의 감사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나 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되 회계질서는 확실히 함으로써 보조금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BTP 3차사업 진입로 부지(동부간선평농수로부지) 매매대금 이자 절감 대책마련

□ 현 황

○ 부천시는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와 아래와 같이 BTP부지 매매계약을 체결 매입하여 제3차 BTP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계약일자: 2005. 08. 22일
- 위 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70-3번지외6필지
- 매 입 가: 157억5천8백만원, (평당2,280천원)
- 면 적: 22,848㎡(6,911.49평)
- 매입조건: 원금균등 5년 분할 납부, 연7.85%,
계약과 동시 토지사용가능조건.

□ 문 제 점

○ 한국농촌공사와 3차BTP부지를 연7.85%에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하였음. 이 계약에 의해 이자로만 3,340백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열악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연7.85%의 이자율은 현행 시중은행 등의 이자율로서는 높은 이자이므로 이보다 낮은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이율을 4.5% 이하로 조정 대체할 경우 850백만원 정도의 이자 절감이 예상되니 이에 농촌공사의 매매대금은 전액상환 대환하여 부천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신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임.

5)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내실 있는 운영지도

□ 현 황

○ 우수문화 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산 창작콘텐츠의 국내수요 창출과 해외시장개척, 수출지원,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설립일: 2001. 8. 29.
- 소재지: 부천시 춘의동 202번지
- 인 원: 28명(정원30명), 영상위원회 8인

지금까지의 연도별 출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9,072	9,000	8,000	2,935	2,250	2,464	4,423	10,407
국 비	2,000	2,000	-	-	-	-	-	-
경기도	14,058	2,000	6,000	770	1,500	1,355	2,433	5,511
부천시	13,014	5,000	2,000	2,165	750	1,109	1,990	4,896중 3,910이전비임

중전 45:55부담비율을 2006. 10. 18일 협약서 개정으로 2007년부터는 80:20으로 부담하기로 함.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천시와 경기도의 부담비율이 45:55로 하다가 2007년부터는 20:80으로 부담비율을 대폭 줄였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투입 예산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 부담액도 증가 되므로 이에 따른 시 부담액 증가로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개선 권고사항

-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이 직접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닌 관련업체를 지원하는 것인바 외형적인 진흥원 자체의 업무를 확장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여 당분간 현재의 투자액 수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업확대는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임.

6) 영상문화단지 정상화 대책수립 및 부실운영의 조기 수습

□ 현 황

- 위 치: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 면 적: 330,264m²(99,905평)

·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투 자 액	주 관	비 고
부천판타스틱스튜디오	40,707㎡	59억	(재)부천문화재단	시설노후, 화재취약, 연간6억 적자운영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	58,566㎡	486억	(주)아인스	매년관람객 감소 및 적자운영
서커스 상설 공연장	11,371㎡	109억	(주)동춘엔터테인먼트	(주)동춘의 자금난으로 공정50%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26,507㎡	600억	부천시	시공중, 문제점 없음
필릭스튜디오	14,876㎡	67억	GMB코리아픽처스(주)	임대기간만료 후 무단 사용, 사용료 10억미납
세계에겐테마파크	16,529㎡	70억	(주)프레니	임대기간만료후 무단 사용, 사용료 체납 3억

□ 문 제 점

- 6개 사업장의 총 투자액이 1,300억 정도가 되나 각 사업장과 시설물 운영의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현재 부천시에서 시공중인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제외한 5개 사업장이 사업중단, 적자운영, 임대료 체납 등 사실상 영상단지 전체가 부실화 되어있는 상태임.

□ 개선 권고사항

- 이와 같은 부실화의 원인은 사업의 시작 초기부터 사업성의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함에도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근시안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보임.
- 따라서 실패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빠른 시일 내 부실을 제거하고 영상문화단지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임.

7) 평생학습센터 예산집행의 일원화의 필요성

□ 현 황

-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연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평생학습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위 치 : 복사골문화센터 2층
- 인 원 : 5명
- 예 산 : 276,635천원(국비25,000천원/시비251,635천원)
(인건비 제외)
- 세부사업내용
 - 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 시민지도력 육성사업
 - 평생학습교실운영, 심포지움, 우수동아리육성사업
 - 초,중,고 평생교육지원연계,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전문연수

□ 문 제 점

- 현재는 평생학습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센터에서는 사업시행만 함으로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 예산집행의 경우 시민지도력 육성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학습동아리(육성사업비40,000천원, 국비50%, 시비50%)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지도력 육성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14,360,000원 및 학습동아리 리더역량강화 연수비로 2,640,160원을 집행하고 22,999,840원의 잔액(57%)이 발생하였음.

□ 개선 권고사항

-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고 예산집행은 평생학습팀에서 집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센터 관련 사업의 예산은 센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 배상금액 증가에 대한 대책 철저

□ 현 황

부천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시에서 배상하는 배상금액이 아래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단위:원)

년 도	사 고 건 수	배 상 금 액	비 고
2006	27	9,869,420	도로21, 체육관2, 주차장2, 공원2
2005	19	6,923,790	도로16, 공원2, 기타1
2004	9	3,353,000	도로7, 공원1, 기타1

□ 문제점

- 사고율이 2005년도는 전년도 대비100%, 2006년도는 50%가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추세로 사고율이 증가 할 경우 배상 비용부담의 증가는 물론 사고로 인한 시민과의 다툼 또한 증가 할 것임.

□ 개선 권고사항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천시는 예상되는 사고위험 각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더 큰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9) 민간위탁금중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 현 황

- 부천시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회관 및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인건비 등을 민간위탁금 예산을 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연말을 종료시점으로 정산을 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건비 대비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매년 지적되어 온 사항이지만 비용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민간위탁금으로 퇴직적립금을 받은 각 복지회관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직원의 퇴직시 이 통장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인하여 관리상의 취약함과 더불어 통제가 되지 않는 예금이 발생하게 됨.

□ 개선 권고사항

-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퇴직보험 등의 가입에 의한 관리가 어렵다면 매년 정산시에 이자수익만 반납 받을 것이 아니라 매년말 퇴직금 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납 받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임.

10) 보관금 반환조치 부적정

□ 현 황

- 범박동 현대홈타운 회주로 소유권 미확보 보관금(예치금)으로 있는 2,260,890,970 원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예치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었고 2006년 11월 2일에 예치금의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조건 완료된 미환급금에 대하여 반환소송 및 환급가능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부천시는 2006년 10월 13일에 개발부담금 및 취득등록세의 정산을 위한 예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자가 있기에 해당 예치금의 공탁이 필요할 것임.

XIII 지방재정 주요 지수별 추이분석

1. 개 요

지방재정분석은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위기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고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1994년 도입 현재 10개의 단위 지표를 마련하여 분석하는 것임. 그러나 재정분석의 틀은 각 국가, 혹은 각 기업마다 개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석의 도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 최소한의 재정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시점보다 정확한 재정분석을 요구하는 시민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예방과 정책적 판단의 도구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임.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세입, 세출 관련 주요 지수들에 대한 추이분석을 제공하여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 지수별 추세 분석자료

1) 세 입

- 연도별 자주재원의 추이
- 연도별 보조금의 추이
- 연도별 채무액 추이
- 연도별 지방세 수납 추이

2) 세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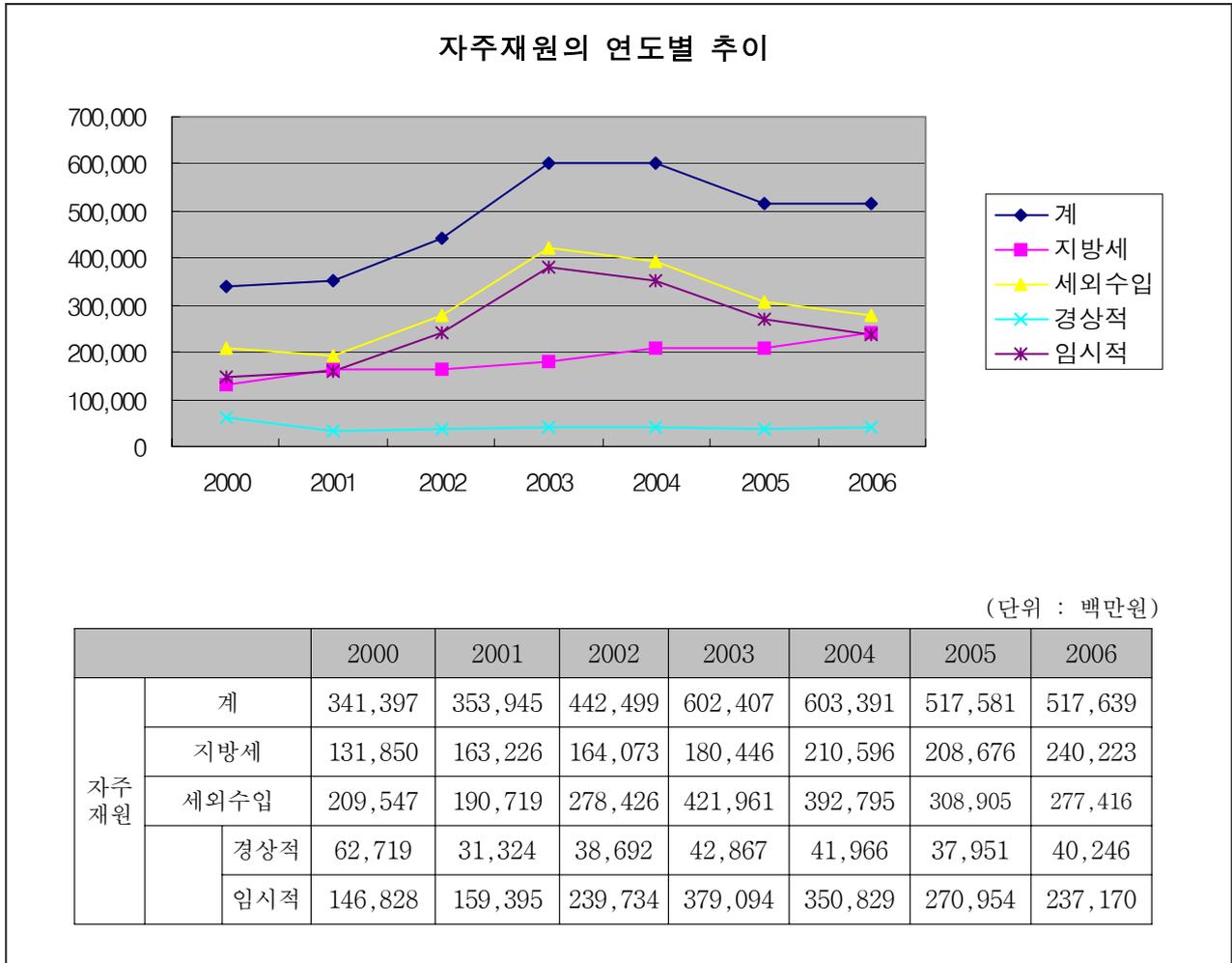
- 연도별 지방세출의 기능별 구성추이

3. 총괄분석

부천시 총 예산은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신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늘고 있는 실정임. 채무액 역시 2006년도부터 증가하고 있음. 세출의 기능별 분석에서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사회개발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방세 수납 등 세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재정운영 전반에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4. 세부 지수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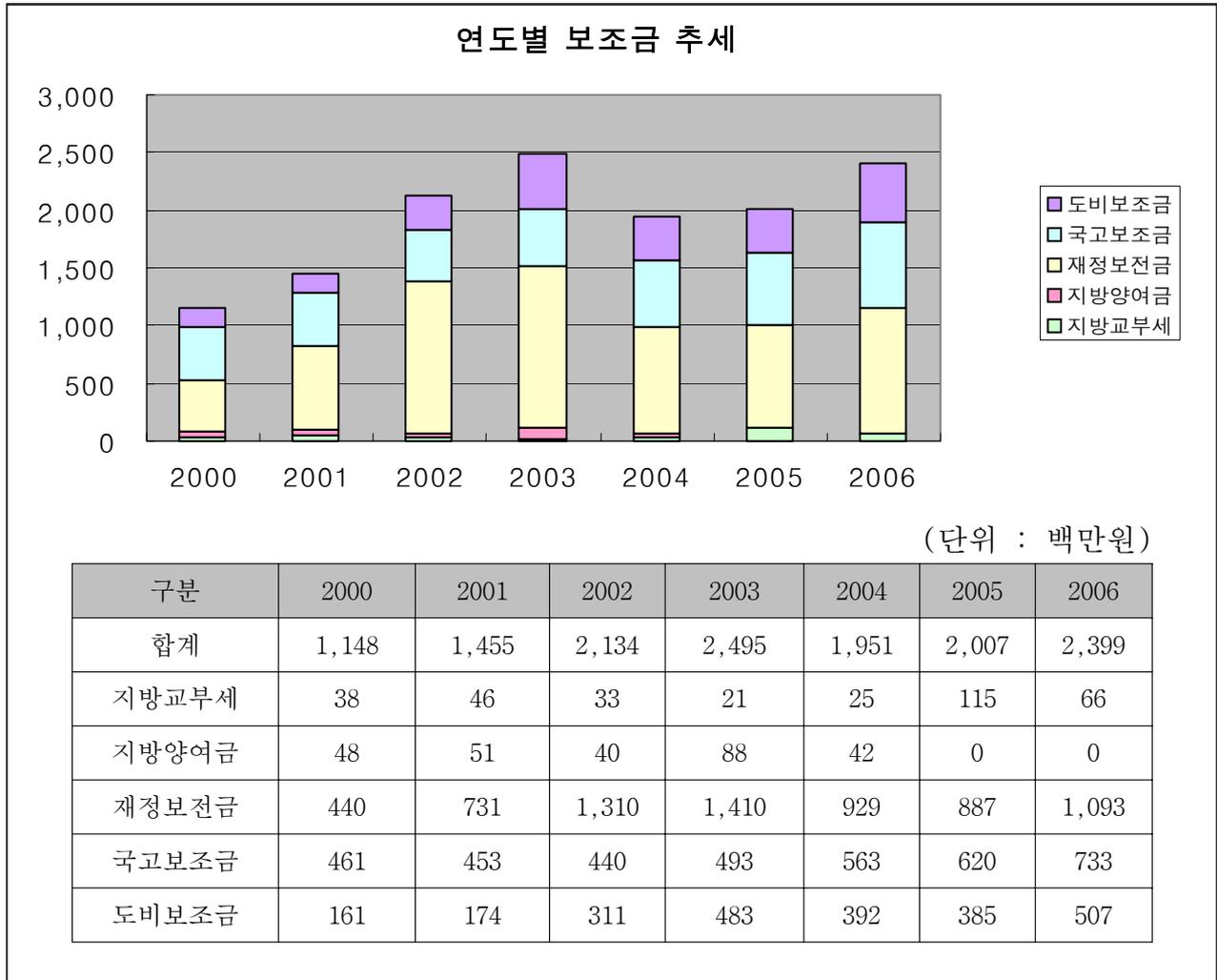
1) 연도별 자주재원의 추이



○ 분 석

- 재정자립도 산정시 가장 중요한 지수가 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대별되는 자주재원이며 그 중에서도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징수액 및 징수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임.
- 추세분석을 보면 지방세는 연도별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다가 2006년에 다소 주춤한 상태임. 세외수입 또한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 등의 영향을 제외하면 지방세와 동일한 추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부천시의 자주재원은 과거의 흐름을 감안하면 특별히 임시적세외수입이 없이는 급격한 변동보다는 지속적인 완만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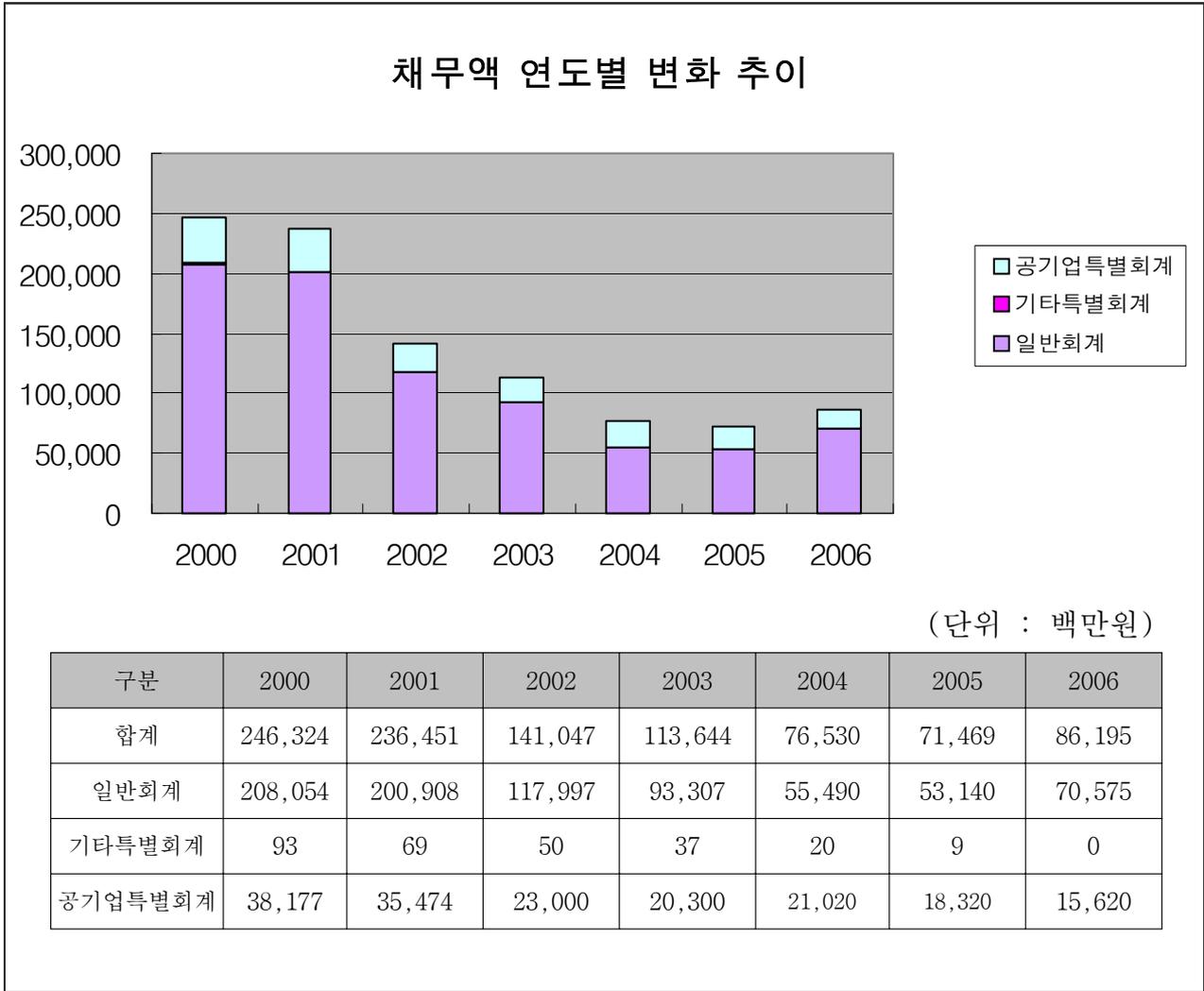
2) 연도별 보조금의 추이



○ 분석

-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입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조정교부금 성격의 재정보전금으로 구성됨. 교부의 배분은 도세징수금의 3%를 기본으로 하며 도세징수 실적과 인구, 재정사정 등을 감안 차등 지급하고 있음.
-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성된다.
- 위 표를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금액은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도세징수실적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와 2003년도 상동과 범박동 등 아파트 입주시의 취,등록세 징수와 관련 대폭 상승 후 하락하였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의 규모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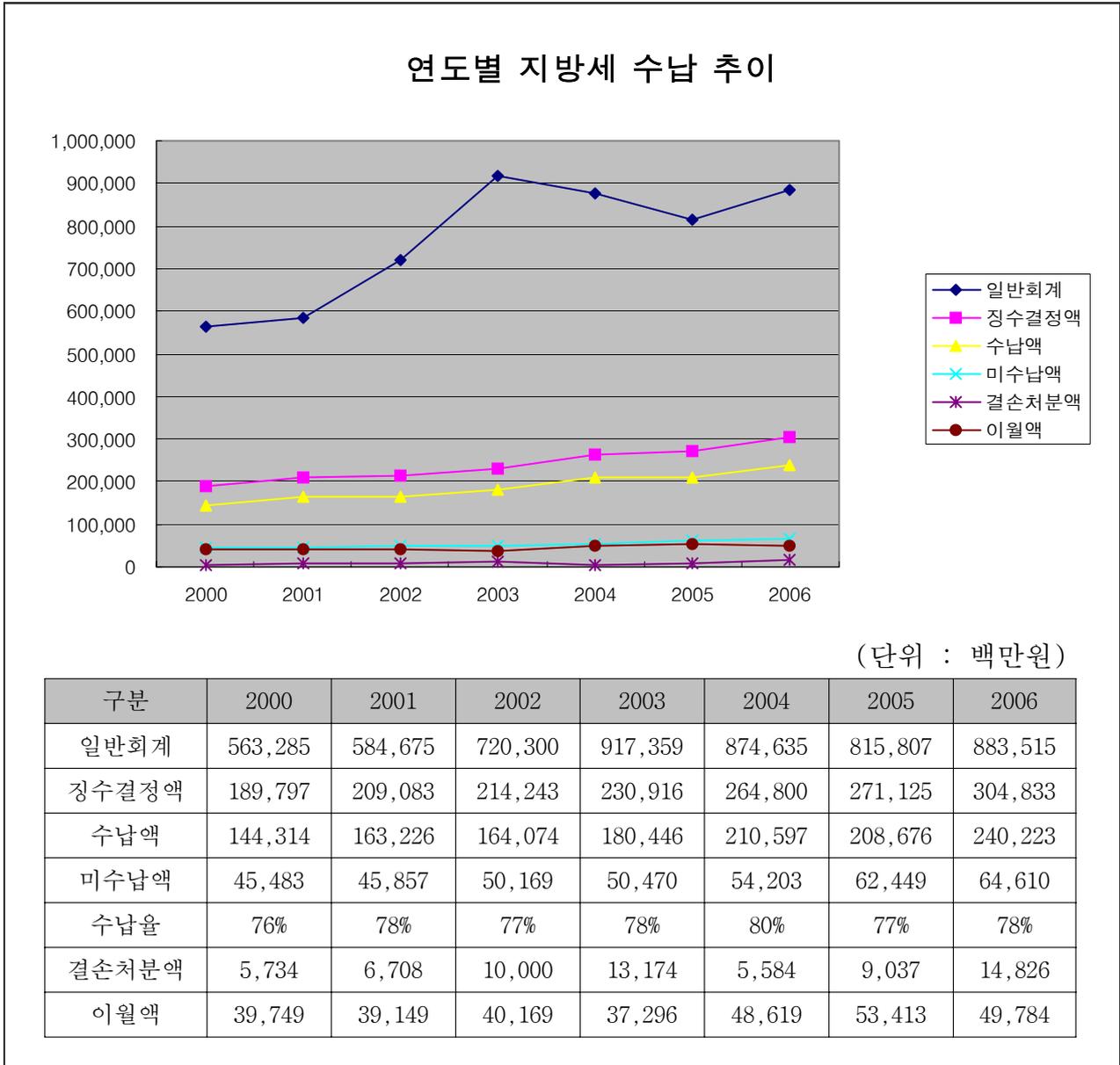
3) 연도별 채무액 추이



○ 분석

- 연도별 채무액의 경우 2000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6년에 다소 증가하였음. 이는 부천시 재정애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가급적 채권발행을 억제하고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자금의 국도비 조달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연도별 지방세 수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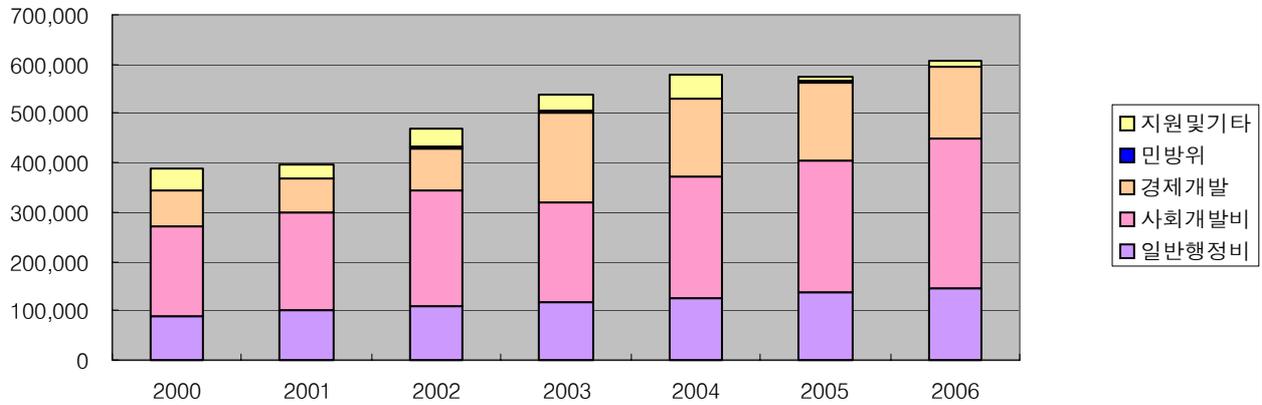


○ 분 석

- 연도별 지방세 현황은 일반회계대비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 2003년, 2006년에는 큰 금액의 결손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지방세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매년 80%를 밑돌고 있는것은 전체 평균 세입의 징수율이 90%에 이른다고 할 때 걱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지방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세원관리는 세정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에 의한 적절한 경쟁의식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5) 연도별 지방세출의 기능별 구성추이

지방세출의 기능별 구성추이(금액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반행정비	89,163	99,556	108,641	116,354	126,925	136,202	146,259
사회개발비	180,841	201,812	233,399	202,825	243,837	269,153	303,056
경제개발	73,672	66,151	87,337	183,721	158,952	157,433	143,521
민방위	1,718	1,226	1,673	1,504	1,403	1,804	2,303
지원및기타	42,579	26,802	37,078	32,288	45,883	9,854	10,548
계	387,973	395,547	468,128	536,692	577,000	574,446	605,687

○ 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에 따라 세출을 분류하는 것을 기능별 분류, 혹은 목적별 분류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시민을 위한 분류” 라고도 함.
- 표에 의하면 총 지방세출은 점진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중 사회개발비가 일반행정비나 경제개발비 등 타 부분에 비하여 금액이나 비율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